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

[시행 2024. 3. 15.] [환경부령 제1082호, 2024. 3. 11., 일부개정]

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4의2] <개정 2018. 10. 18.>

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7조의2 관련)

1. 폼알데하이드 $21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2. 벤젠 $3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3. 톨루엔 $1,00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4. 에틸벤젠 $36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5. 자일렌 $70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6. 스티렌 $30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7. 라돈 $148\text{Bq}/\text{m}^3$ 이하

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

[시행 2024. 2. 27.] [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20호, 2024. 2. 27., 일부개정]

ES 02130.g

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2023

(Indoor air sampling and evaluation method)

2.2 신축공동주택

2.2.1 시료채취 (측정)세대 선정

2.2.1.1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 세대일 때 3 개 세대 (저층부, 중층부, 고층부)를 기본으로 한다. 100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 세대씩 추가하여 최대 20 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 (표 3).

2.2.1.2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중층부, 저층부, 고층부 순으로 증가한다. 저층부는 최하부 3 층 이내, 고층부는 최상부 3 층 이내, 중층부는 전체 층 중 중간의 3 ~ 4 개 층을 의미한다 (예 : 15 층 건물에서 저층부는 1 층 ~ 3 층, 중층부는 7 층 ~ 9 층, 고층부는 13 층 ~ 15 층). 단, 주상복합아파트 등 1 층이 주거세대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주거세대가 시작하는 최저층을 1층으로 정하여 저층부, 중층부, 고층부로 구분한다.

2.2.1.3 공동주택이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정된 시료채취 세대를 넘지 않도록 각 동에서 골고루 선택한다. 하나의 단지에 시공사가 여러 개인 경우는 시공사별로 구분한 총 세대수에 따른 시료채취 세대를 구분하여 선정한다.